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 7. 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1. 제안배경

-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으며(올해에만 17건),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로 대체복무 도입 찬성비율 각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 6. 27.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입니다.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4개 단체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대체복무제 기준을 제안합니다.
- 한편, 2017. 6. 13.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17차 회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를 본 제안서에 첨부합니다. 위 보고서는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즉각 석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민간 성격의 복무로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을 것 등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기준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차별이나 차별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일련의 원칙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

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는 군과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대체복무 관리·감독 권한은 군이나 군 산하기관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 대체복무기구 소속관청 해외사례

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 내무부 / 독일¹⁾ -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

-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1년, 정민규 외 99인 대 대한민국, 개인청원 1642-1741/2007)

- “대체복무에 대한 모든 통제 및 관할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군은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및 내부 규정들이 대체복무가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온전히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 2011년,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률 개정안에 대한 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1) 독일의 경우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되었음.

나.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입니다

국제사회는 복무 형태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군 복무와 형평성이 인정되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 복무를 기준으로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 제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점차 단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체복무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현역 군 복무기간보다 일정하게 긴 기간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는 있겠으나, 아래와 같은 국제사회 기준을 고려할 때 육군 사병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1.5배인 3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대체복무 기간 해외사례

독일, 대만²⁾, 덴마크, 스웨덴 - 현역 복무와 동일 / 그리스³⁾, 스페인 - 1.5배

-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 2008년, 그리스 대체복무에 대한 견해)

-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2배로 정한 이유가 거부자의 양심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그런 이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프레데릭 푸앵 대 프랑스, 개인청원 666/1995)

-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77호, E/CN.4/RES/1998/77)

2) 대만의 경우 2001년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당시 현역병은 1년 10개월 기준 1.5배 기간이 긴 2년 9개월을 대체복무기간으로 설정하였으나, 2003년에 가산기간이 4개월로, 2007년에 2개월로 단축되었고, 이후 동일하게 조정되었음.

3) 그리스의 경우 초기 대체복무기간이 군 복무의 2배에 달하였으나,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그리스의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이 유럽사회권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그리스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의 1.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하였음.

다.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그 본질상 어느 때든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생긴 신앙 또는 신념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역을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신앙을 갖게 되어 집총을 거부하고 수감된 사례, 현역 복무 이후 종교적·평화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입영 전으로만 대체복무 신청기한을 한정하게 되면 구속자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대체복무는 인정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한 형사처벌을 방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제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 현역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허용 해외사례
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 “이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77호, E/CN.4/RES/1998/77)
-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이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유럽평의회, 2001년, 결의1518,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행)
-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비군 동원훈련 및 소집 훈련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도 양심을 이유로 그에 응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3. 우선 제안 사항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선정해야 합니다.
-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할 담당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해당 기구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별첨

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A/HRC/35/4)

<끝>